

# 고려대학교 세종총학생회 회칙 및 세칙

종류 및 연번	제명	최신 개정연혁	부수된 규칙
회칙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	2024. 03. 09. 【제10차 개정】	
세칙 제1호	선거시행세칙	2024. 03. 09. 【제6차 개정】	선거시행규칙
세칙 제2호	사무처리세칙	2021. 04. 08. 【제1차 개정】	사무처리규칙
세칙 제3호	재정운용세칙	2023. 10. 31. 【제2차 개정】	재정운용규칙
세칙 제4호	회의진행세칙	2024. 03. 09. 【제1차 개정】	회의진행규칙
세칙 제5호	예 · 결산특별위원회 시행세칙	2023. 11. 01. 【제2차 개정】	예 · 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

## 총학생회칙 제 · 개정 연혁

1995. 선포  
 2013. 전면 개정  
 2015. 전면 개정  
 2016. 부분 개정  
 2018. 전면 개정  
 2019. 부분 개정  
 2020. 전면 개정  
 2021. 04. 08 부분 개정  
 2021. 09. 09 부분 개정  
 2023. 11. 01 전면 개정  
 2024. 03. 09 부분 개정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

## 1장 총칙

제1절 총칙

## 2장 의결기구

제1절 학생총회

제2절 학생총투표

제3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4절 중앙운영위원회

## 3장 집행기구

제1절 총학생회장단

제2절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제3절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제4절 직속위원회

제5절 산하위원회

## 4장 자치산하기구

제1절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제2절 학과 및 전공별 학생회

제3절 동아리연합회

제4절 총예비역회

## 5장 독립기구

제1절 독립위원회

제2절 감사원

## 6장 재정

제1절 재정

## 7장 징계

제1절 징계

## 8장 선거

제1절 선거

## 9장 회칙개정 및 부칙

제1절 회칙개정

제2절 부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회 회원의 자주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 창조와 전통적 학도정신을 함양하고, 자유 정의 진리의 건학이념의 계승과 지성과 야성의 조화로 조국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실현하고, 시대정신을 선구하는데 적극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위치한다.

### 제4조 【회원】

- ① 본회의 정회원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 ② 휴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초과학기 재학생은 초과학기 재학 기간 동안 준회원이 되며,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제1항,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③ 대학원생은 회원에서 제외한다.
- ④ 졸업, 자퇴, 퇴학 등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⑤ 국내, 외국대학의 재학으로 교환, 방문학생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부과정을 수학하는 자는 그 동안 교류회원이 된다. 교류회원은 준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⑥ 준회원 중 정회원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해당학기 남은 기간 동안 정회원이 된다. 단, 중앙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당선 공고일까지는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이념과 목적에 부정하는 것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⑤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노력하며, 이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 ⑥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⑦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할 의무를 가진다.
- ⑧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본회 회칙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구성】 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을 둔다.

- ①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② 집행기구 :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 ③ 자치산하기구 :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학과 및 전공별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예비역회, 단위별 비상대책위원회
- ④ 직속위원회 : 교육복지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제7조 【학교 운영 협의 및 참여】**

- ① 본회는 학생자치활동,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학교 정책, 그 밖의 필요에 의해 학교 운영에 협의 및 참여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학교 기구 및 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기구 및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의결기구

### 제1절 학생총회

**제8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9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권한】** 학생총회는 학생회칙의 개폐 및 본회의 중대한 사항을 토론,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11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맡고, 부총학생회장 또한, 궐위 시에는 제44조 **【위원장】**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직을 맡는다.

**제12조 【소집】**

- ① 학생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원 2/3 이상,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제42조 **【권한 및 의무】** 제4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학생총회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일주일 전에 공고가 되어야 하며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도 5일 전에 공고가 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탄핵소추】**

- 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소환 또는 탄핵은 정회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② 탄핵에 대한 결정은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를 통하여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의장을 총학생회장단이 궐위 시와 같은 경우로 선출한다.
- ③ 학생총회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의 시행 여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며, 총투표

의 관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구성된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단,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 구성방식은 제3장 제18조 **【관리】**를 따른다.

#### 제14조 **【의결】**

- ① 학생총회는 회원의 1/5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생총회에서 소집요건이 불충분하여 다루지 못한 안건이 있을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단, 제2장 제13조 **【탄핵소추】**는 제외한다.

### 제2절 학생총투표

제15조 **【구성】**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정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6조 **【지위】** 학생총투표는 제2장 제1절 학생총회와 동등한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권한】**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중대한 사안을 투표를 통해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18조 **【관리】** 학생총투표의 관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가 맡는다.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규칙 제5장 제22조 **【구성】**을 따른다. 단, 총학생회장단 탄핵 관련 사안으로 하는 학생총투표의 경우, 총학생회 추천인은 제외한다.

제19조 **【개표성사율】** 학생총투표의 개표성사율은 다음에 따른다.

- ① 총학생회장단 탄핵 : 37% 이상, 개표 후 찬성률은 70% 이상일 때 통과시킨다.
- ② 정책투표 : 20% 이상, 개표 후 찬성률은 50% 이상일 때 통과시킨다.
- ③ 이 외에 학생총투표를 진행할 사안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중요도에 따라 성사율을 결정한다.

제20조 **【안건폐기】** 학생총투표 개표성사율에 미치지 못한 안건은 폐기한다.

### 제3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제21조 **【구성】**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 학과 및 전공별 학생회장, 총예비역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각 단위 회원들의 전권을 위임받는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불참하는 대의원은 대리인 지정 여부 및 대리인 성함을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대의원의 청가 · 결석】

- ① 대의원이 사고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가서의 제출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 3일 전까지, 결석계의 제출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로부터 3일 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청가서와 결석계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심의한다.
- ③ 청가서와 결석계의 작성은 별첨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④ 대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때 외에는, 결석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청가서결석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대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등을 통하여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지위】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에서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를 제외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24조 【제한】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결정은 학생총회의 결정을 위배할 수 없다.

제25조 【안건】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
2. 총학생회장단 발의 안건
3. 정회원 5% 이상의 연서 발의
4.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 제26조 【권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장 제2조【목적】을 고려하여 학생 자치 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심의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표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학생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 ② 총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 ③ 총학생회 사업계획과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
- ④ 학생회비에 대해 심의하며
- ⑤ 총학생회 결산 및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며
- ⑥ 새로 구성된 기구나 집행부서에 대한 심사 및 인준권을 가지며
- ⑦ 필요한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하에 특별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 ⑧ 총학생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 ⑨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 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 ⑪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과 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⑫ 총투표 시행여부 및 개표성사일에 대한 결정을 한다.
- ⑬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회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를 제외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제1장 제2조【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 【예·결산특별위원회】**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산하에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28조 【의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는 제2장 제11조 【의장】 기준을 따른다.

**제29조 【소집】**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 외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1회씩 1년에 2번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1/4 이상, 중앙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 정회원 5% 이상의 연서 발의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회의는 긴급한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은 일주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안건과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 등은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 의한 소집은 예외이다.
- ⑤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4호는 온라인으로만 게시하여도 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4. 각 단위별 대의원 수

**제30조 【재난상황 발생 시 소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 해당하는 자연재난 혹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한 회의 시작 일시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일시, 매체 등의 진행 방식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본회원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

**제31조 【의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1/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제2장 제26조 【권한】 중 제1항, 제2항, 제4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것은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탄핵소추】**

- ①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소환 또는 탄핵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 ② 임시의장은 탄핵 발의 5일 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제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임시의장은 중앙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 ③ 탄핵소추안 발의의 승인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④ 탄핵소추안 승인 시 탄핵 대상자는 그 즉시 제2장 제13조【탄핵소추】 제2항의 시기까지 직  
무가 정지된다.
- ⑤ 탄핵의결은 제2장 제13조【탄핵소추】 제2항에 따른다.
- ⑥ 제2장 제4조 학생총회 의장 선출 방법에 따른다.

## 제4절 중앙운영위원회

**제33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학생대표자  
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 기구이다.

**제34조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학 및 100인 이상의 회원이 소속된  
독립학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총예비역회장으로 구성된다. (단,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학생회장 궐위 시, 약학대학의 경우 2학기부터 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5조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 ① 총학생회 예산을 심사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하며
- ② 총학생회 결산보고를 심사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하며
- ③ 총학생회 사업을 심의, 조정하며
-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을 결정하며
- 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 ⑥ 총학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준비를 조직하며
- ⑦ 학생총투표와 그 밖의 총학생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준비, 진행하며
- ⑧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하며
- ⑨ 회칙개정을 발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며
- ⑩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하에 한시적으로 특별회의 혹은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 ⑪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변경, 취소를 할 수 있다.

또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36조 【의장】**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는 제2장 제  
11조 【의장】기준을 따른다.

**제37조 【소집】**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2주마다 1회 개회를 기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나  
중앙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38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2/3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2/3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제39조 【의무】

- ① 중앙운영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각 단위의 사업과 활동을 해당 회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매 학기 개강일 전 30일 이후부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 제3장 집행기구

### 제1절 총학생회장단

#### 제40조 【지위】

- 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총학생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를 대신한다.
- ③ 부총학생회장은 집행부 사업의 조절, 통제 등 일상 업무 관장의 기본적 의무를 가진다.

#### 제41조 【임기】

-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당선 확정 후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당선 확정 후부터 임기 시작일 전 날까지는 당선인의 자격을 가진다. 단, 차기 보궐선거가 무산될 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된다.
- ② 재선거의 경우 임기는 선거당선 확정 후 익년도 1월 1일로부터 한다.
- ③ 보궐선거의 경우 임기는 선거당선 확정 직후부터 한다.
- ④ 11월 선거에서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임기 중인 총학생회장단은 3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단, 졸업예정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⑤ 선거시행세칙 제4장 제1절 제9조 【선거 기획】 2항에 의거하여 진행된 3월 보궐선거가 무산될 시 4월 1일부터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총학생회장단이 졸업으로 인해 모두 궐위일 경우 3월 2일부터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
- ⑥ 총학생회장단 모두 궐위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시행하며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제2장 제11조 【의장】에 의거해 의장 대행을 선출한다.

#### 제42조 【권한 및 의무】 총학생회장단은

- ① 중앙집행위원회 및 직속위원회의 각 위원장을 임명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구하며
- ② 본회의 대표로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중앙운영위원회에 총학생회 중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며

- ③ 학생자치 활동에 관계되는 제반 학교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 ④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생총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 ⑤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준비를 총 지도하며
  - ⑥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내에 한시적 특별회의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 ⑦ 직속위원회의 추가 부서 설치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안할 수 있으며
  - ⑧ 중앙집행위원회 및 직속위원회의 각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 ⑨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을 주재하며
  - ⑩ 여타 학외 단체나 사회에 대해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며
  - ⑪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책임을 지며 사업을 보고하며
  - ⑫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및 직속위원회의 인사권을 가진다.
  - ⑬ 총학생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또한 그 밖의 본회의 책임자로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제43조 【지위보장】** 총학생회장단은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 제2절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제44조 【위원장】**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상위 의결기구에서 인준한다.

**제45조 【지위】**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임시적 지위를 가진다.

### 제46조 【구성】

- ①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결위 후 1주일 이내에 추대하여야 한다.
- ③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 인준 직후부터 차기 당선 확정 전까지로 한다.

**제47조 【권한】**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을 따른다.

- ① 제2장 제35조 **【권한】** 제9항, 10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 ②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직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48조 【적용】** 단과대학, 학과 및 전공별 학생회장 등의 경우 해당 단과대학과 독립학부, 학과 및 전공별 학생회의 규칙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규칙이 없을 경우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 제49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50조 【중앙집행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 ① 중앙집행위원장
- ②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차장국원

### 제51조 【중앙집행위원장】

-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이 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감독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사후 인준이 부결된 경우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을 중앙집행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총학생회장이 새롭게 임명한 중앙집행위원장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제52조 【국서】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국서를 둘 수 있다.
- ② 각 국서의 국장과 차장,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 제53조 【업무】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개의시행을 준비 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제작한다.
-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 제54조 【운영】

총학생회장단 혹은 중앙집행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55조 【집행위원장회의 등】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학과【부】전공 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집행위원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학과【부】전공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의 동종 업무 담당 국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계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절 직속위원회

### 제56조 【지위】

본회의 활동에서 특별 분야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는 총학생회장단 산하의 직속위원회이다.

### 제57조 【업무 및 권한】

① 직속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교육권 확보 및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매년 상시적으로 직속위원회를 유지한다. 직속위원회의 업무 개시 및 해체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직속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권한이 있다.

③ 직속위원회의 제반 사업은 정례적으로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활동은 총학생회장단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④ 총학생회장단이 임명한 직속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 제5절 산하위원회

### 제58조 【지위】

상위의 의결기구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집행기구이다.

### 제59조 【업무 및 권한】

① 각 의결기구에서 산하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하위원회의 제반 사업은 정례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 및 상위 의결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활동은 상위 의결기구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 제60조 【신설과 해체】

① 산하위원회의 신설과 해체는 상위의 의결기구에서 결정한다. 상위의 의결기구 혹은 상위의 의결기구에서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 시 신설 혹은 해체할 수 있다.

### 제61조 【위원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위의 의결기구 출석인원 과반 이상 찬성 시 인준된다.

### 제62조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 ①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 인수를 위해 당선 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을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 ②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전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요 사업 분석
  3. 후임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준비
  4. 기타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업무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③ 총학생회 인수위원장은 당선된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해산한다.

### 제63조 【당선인】

- ① 당선인은 선거당선 확정일로부터 임기 시작일 전 날일까지로 해당 자격을 가진다.
- ② 인수인계 기간 동안 당선인은 임기연도의 사업 구체화 및 실행화 준비를 한다.
- ③ 당선인은 필요에 의해 총학생회 사업 및 업무 전반에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인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총학생회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공약이행 및 차기 사업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용을 사용할 시에는 관련된 사업계획서 제출 후 사용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용은 현직 총학생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 제4장 자치산하기구

### 제1절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제64조 【구성】 단과대학 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각 단과대학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65조 【지위】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의 최고 자치활동 기구이다.

제66조 【독립학부】 독립학부는 특정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은 학부이다.

### 제67조 【회원】

- ①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소속된 재학생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휴학생과 초과학기 재학생은 준회원이 된다.
-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준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④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 【의결기관】**

-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총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대표자회의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이다.
- ④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 ①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독립학부는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②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을 대표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은 적절한 절차를 경유한 단과대학 학생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해당 단과대 모든 학과 및 전공의 회계보고를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주관하여 온·오프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 ⑤ 독립학부는 독립학부 학생회장이 주관하여 회계보고를 온오프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 ⑥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⑦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의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 【집행기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관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이며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대표자회의와 단과대학·독립학부 운영위원회 앞에서 사업보고를 한다.

**제71조 【재정】**

-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영세칙에 따른다.

-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제107조 **【결산보고 및 승인】** 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예정일 2일 전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07조 **【결산보고 및 승인】** 제1항의 예산안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자치규칙】**

-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임기 관련해서는 자치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더라도 총학생회칙 제 41조 **【임기】**, 제63조 **【당선인】**의 내용을 따른다. (단, 약학대학은 제외한다.)

**제2절 학부·과·전공 학생회**

**제73조 【구성】**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각 학부·과·전공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74조 【지위】**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각 학부·과·전공의 최고 자치활동 기구이다.

**제75조 【회원】**

- ① 각 학부·과·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및 휴학생은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회원이 된다.
- ②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회원은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휴학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학부·과·전공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④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전공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 【의결기관】**

- ① 학부·과·전공 학생총회는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②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학부·과·전공 학생총회와 학부·과·전공 운영위원회의 중간 위계를 가지는 의결기구로 학부·과·전공 학생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 ③ 학부·과·전공 운영위원회는 학부·과·전공 학생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이다.
- ④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제77조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

- ①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②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은 각 학부·과·전공을 대표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 ③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은 회계보고를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이 주관하여 온·오프라인에 투명하게 공개 할 의무가 있다.
- ④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은 각 학부·과·전공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학부·과·전공 학생회장【단】의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학부·과·전공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 【집행기관】**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관은 각 학부·과·전공 학생회 집행위원회이며 학부·과·전공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학부·과·전공 학생대표자회의와학부과전공 운영위원회 앞에서 사업보고를 한다.

### 제79조 【재정】

- ①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해당 학부·과·전공 자치규칙에 따라 재정을 얻는다.
- ② 학부·과·전공 학생회의 재정관리는 해당 학부·과·전공 자치규칙에 따른다.

### 제80조 【자치규칙】

- ① 학부·과·전공 학생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 ② 학부·과·전공 학생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절 동아리연합회

**제81조 【구성】** 동아리연합회는 해당 회에 등록된 동아리 【이하 중앙동아리】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82조 【지위】** 동아리연합회는 모든 중앙동아리를 대표하는 최고 자치활동기구이다.

**제83조 【회칙】** 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학생회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동아리연합회칙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

### 제84조 【회장】

- ① 동아리연합회장은 중앙동아리를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칙에 근거하여 선출한다.
- ③ 동아리연합회칙(제5장 제3절 제27조)에 근거하여 동아리연합회장의 궐위 시,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동아리연합회장의 모든 역할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동아리연합회장은 적절한 절차를 경유한 동아리연합회의 사업계획과 예·결산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동아리연합회는 제107조 **【결산보고 및 승인】** 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예정일 2일 전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07조 **【결산보고 및 승인】** 제1항의 예산안·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5조 **【분과장】**

- ① 동아리연합회의 각 분과는 독자적으로 분과장을 선출하며, 동아리연합회의 각 분과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② 동아리연합회의 각 분과장의 선거는 동아리연합회칙에 의거한다.

**제86조 【집행】**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동아리대표자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업보고를 한다.

**제87조 【권한과 활동】** 동아리연합회의 각 기관은 동아리연합회칙에 의거하여 그 권한과 활동을 행한다.

### 제4절 총예비역회

**제88조 【구성】** 총예비역회는 본회의 구성원 중 예비역 전체로 구성한다.

**제89조 【지위】** 총예비역회는 본회 예비역의 대표기구이다.

#### 제90조 **【회장】**

- ① 총예비역회장은 예비역들을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② 총예비역회장은 총학생회칙에 근거하여 선출한다.
- ③ 총예비역회장은 적절한 절차를 경유한 총예비역회의의 사업계획과 예·결산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총예비역회장은 제107조 **【결산보고 및 승인】** 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예정일 2일 전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총예비역회의의 회장,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07조 **【결산보고 및 승인】** 제1항의 예산안·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총예비역회장은 총예비역회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91조 【회칙】** 예비역회의 자율적 활동을 위해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역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예비역회칙을 따른다.

## 제5장 독립기구

### 제1절 독립위원회

**제92조 【정의】** 독립위원회는 독립적인 집행과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전문기구이다.

#### 제93조 【인준】

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산하위원회를 독립위원회로 전환하거나 독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독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심의받는다.

1. 소개서
2. 연간 사업계획서
3. 자치규칙
4. 예산안
5. 독립 **【또는 산하】**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독립위원회 인준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독립위원회 인준안을 의결한다.

#### 제94조 【지위】

① 독립위원회는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② 독립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 혹은 세칙에 따라 구성한다. 단, 자치규칙에 따라 구성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③ 각 독립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집행부를 둘 수 있다. 단,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독립위원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④ 독립위원회는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5조 【업무 보고】

① 각 독립위원회 위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각 독립위원회 위원장은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 【재정】** 독립위원회는 필요시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제97조 【징계】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독립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독립위원회 위원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독립위원회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문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독립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8조 【제명·합병】

①독립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독립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다.

1. 독립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을 때
2. 독립위원회가 중립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 제2절 감사원

제99조 【지위】 감사원은 총학생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부여받은 독립기구이다.

제100조 【권한】 감사원은 부정행위나 과실에 대해 총학생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총학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회계 장부 및 관계 서류, 물품, 증빙 등의 제출 요구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 제101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원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원의 구성요건은 감사목적이 명시된 총학생회 정회원 5% 이상의 연서발의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의 연서발의로 한다. 그리고 구성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최소 7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도 최소 3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한다.

④ 감사원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을 임명할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구성이 완료 또는 변동되면 공중이 알 수 있

게 공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감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2.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자
3. 총학생회장단이 임명한 자가 구성한 자치 기구에 소속된 자
4. 기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

#### 제102조 【감사원의 결정】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1. 감사위원 임면 사유 발생
2. 감사보고서 확정
3. 징계 의견 확정

#### 제103조 【감사원의 존속 기간 및 활동】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된 다음 날부터 14일간 활동한다.

②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중이 알 수 있게 공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다음 날부터 활동 기간이 7일 연장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한다.

③ 감사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⑤ 총학생회가 자료 제출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 내용 일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감사원은 활동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위원회 활동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위원 구성
2. 감사원의 활동 기간
3. 감사원의 감사목적
4. 감사 중점 사항
5.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 감사원이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감사보고서에 징계의견을 명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의 절차가 완료되면 감사원의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

## 제6장 재정

### 제1절 재정

제104조 【수입】 총학생회의 수입은 총학생회비와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105조 【회계연도】

① 총학생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에 맞춘다.

#### 제106조 【회비】

- ① 총학생회비는 매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 ② 총학생회비 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 제107조 【예산】

- ① 예산은 매학기 마다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일 10일 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출된 예산안을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예산안 확정 이전에 예산의 집행이 부득이한 경우 또는 예산안이 총학생회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은 집행할 수 있다.
- ④ 예산안 확정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승인을 얻는다.

#### 제108조 【결산보고 및 승인】

- ① 집행위원회는 매학기 마다 결산보고를 하며, 다음 각 호를 따라 결산 안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1. 예·결산특별위원회의 1학기 회기: 작년도 3분기·4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1분기·2분기의 예산안
  - 2. 예·결산특별위원회의 2학기 회기: 금년도 1분기·2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3분기·4분기의 예산안
- ②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총학생회비와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결산을 사전 심의한다.
- ③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내용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문서의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 제109조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예산안·결산 심의에 관한 특례】

사전 심의에서 의결된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제110조 【인준】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예정일 2일 전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결산특별위원회의 1학기 회기: 작년도 3분기·4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1분기·2분기의 예산안

2. 예·결산특별위원회의 2학기 회기: 금년도 1분기·2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3분기·4분기의 예산안

②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심의한다.

③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결산 제출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기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제107조 【결산보고 및 승인】에 따라 사전 심의를 거친 예산안·결산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안·결산을 심의한다.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승인된 예산안·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 제111조 【재심의】

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결산이 부결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재심의를 받는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기구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함에도 수정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 혹은 재심의에서도 예산안·결산이 부결된 기구에 대해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26조의 징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 제112조 【재정세칙】

재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재정 세칙으로 정하며, 재정 세칙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 제7장 징계

### 제1절 징계

#### 제113조 【징계에 관한 사항】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원, 자치산하기구, 직속위원회, 산하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
  1.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2. 불순한 의도로 본 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때
  3.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한 때
  4. 대의원 2/3 이상의 자격 상실 요청이 있을 때
- ④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집행한다.
  1. 제3항 1호와 제2호에 의거하여 대의원 중 2/3 이상이 악영향을 받았다고 동의한 때
  2.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권익 침해가 현저하다고 대의원 중 2/3 이상이 동의한 경우
  3. 제3항 제4호에 의거한 경우
  4. 직권을 이용해 개인이 부당이득을 편취한 경우와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업무 및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⑤ 회원에 대한 징계는 제3호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사과문 게재 기간은 최대 한 달을 넘을 수 없으며, 징계 중에 학기가 종료되더라도 동일하게 집행한다.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졸업, 자퇴, 퇴학 등으로 본교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되어 회원 자격을 잃을 때까지로 정한다.
  3. 제명은 졸업, 자퇴, 퇴학 등으로 본교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되어 회원 자격을 잃을 때까지 지속된다.
- ⑥ 자치산하기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예산의 삭감. 단, 총학생회비를 받지 아니하는 단위는 제외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 【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5. 자치산하기구 자격 박탈
- ⑦ 자치산하기구에 대한 징계 기준은 제3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⑧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출석 정지

3. 대의원 자격 정지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된다】**

4. 대의원 제명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도 제명된다】**

⑨ 현재 총학생회장단인 자에게는 제2항 제3호와 제8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를 할 수 없다.

⑩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징계는 제26조 **【권한】** 제11항에 따른다.

⑪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 제114조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31조**【의결】**의 과정에 따른 징계사항이 의결되면 의결된 당일로부터 일주일의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둔다. 이의제기 신청 기간 동안 징계가 결정된 회원은 소명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 받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당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시행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에 대해 하향조정, 취소, 유지 중 하나를 의결할 수 있다. 의결요건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처음 의결된 징계를 기준으로 하여 경고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제명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이의제기와 심의 절차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2회의 이의제기 이후에 확정된 징계에 대해서는 집행이 확정된다.

### 제115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제113조 **【징계에 관한 사항】**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의거하여 제113조 제2항의 각호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 징계의 집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징계 집행 기준>의 처벌은 차등적이며, 내림차순으로 각호의 이전 호를 모두 포함하여 집행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의결된 징계사항은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가 집행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에 대한 상향 조절을 요청하는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징계 미이행에 따른 징계 상향 조절에 대한 안건 심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르며,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제114조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단, 이 경우 이의제기는 1회로 제한한다.

④ 한번 집행된 징계는 반복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 제116조 **【징계자에 대한 기록】**

- ① 회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고 집행되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자에 대한 이름, 소속, 학번, 징계사유를 문서화한다.
- ② 징계자에 대한 기록을 담은 문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보관하며 차기 중앙운영위원회가 출범 시 인수인계를 한다.
- ③ 징계자에 대한 문서는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이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타 회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④ 해당 문서 내용을 유출하거나 외부에 발설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
- ⑤ 징계자가 졸업, 자퇴, 퇴학 처리에 관한 문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징계자에 대한 기록을 삭제한다.

## 제8장 선거

### 제1절 선거

제117조 **【선출】** 학생회 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한 보통, 평등, 직접선거를 행한다.

제118조 **【시기】**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선거에 대한 준비는 민주적,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 제119조 **【입후보자격】**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의 정회원으로 4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치고, 회원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학과 및 전공별 대표의 입후보자격은 해당단위의 회칙과 세칙에 따른다. 단, 해당 단위의 선거규칙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 선거규칙을 따른다.

#### 제120조 **【보궐선거】**

- ①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학 및 기구대표자가 탄핵을 받거나 사퇴하였을 때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넘을 경우 궐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하며 궐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 ② 기간 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못하였거나 선거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제2장 제11조 **【의장】**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제2항의 선거방식에 따른다.
- ④ 총학생회장단이 특별한 사유로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장 제11조 **【의장】**을 따른다. 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보궐선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학과 및 전공별 대표의 궐위 시에는 해당 단위의 회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21조 **【기타】** 선거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9장 회칙개정

### 제1절 회칙개정

제122조 **【발의】** 총학생회칙 개정 발의는 다음에 의한다.

- ① 회원 1/20 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②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123조 **【소집, 의결】**

회칙개정 발의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의거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124조 **【구성】** 회칙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단 외 추천 1인
2. 단과대학 학생회장 외 각 추천 1인
3. 동아리연합회장, 총예비역회장 외 각 추천 1인

제125조 **【공포】** 제정 및 개정 후 확정된 회칙은 즉시 총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 제2절 부 칙

제126조 **【효력】** 총학생회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7조 **【개정 후 효력】** 이 회칙은 공포 후 48시간 이후부터 시행된다.

제128조 **【기타】** 총학생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판결한다.

# 선거시행세칙

[고려대학교 세종총학생회 세칙 제1호]

2020.10.15 제 정	2021.04.08 개 정
2021.09.09 개 정	2023.11.01 개 정

제1장 총 강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3장 후보자 등록 .....	
제4장 선거	
제1절 통칙 .....	
제2절 선거운동 .....	
제3절 선거유세 .....	
제4절 선거본부의 이의제기 .....	
제5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6장 참관인	
제1절 투표참관인 .....	
제2절 개표참관인 .....	
제7장 징계 .....	
제8장 투표	
제1절 통칙 .....	
제9장 개표 .....	
제10장 당선 .....	
제11장 재선거 및 재투표 .....	
제12장 부칙 .....	

## 제1장 총강

### 제1조 【선거의 원칙】

- ① 선거는 전대(前代) 학생회의 사업을 발전적으로 평가, 계승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치러져야 한다.
- ② 모든 학생회의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치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제2조 【선거규칙의 목적】**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규칙(이하 “규칙”)은 총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칙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 규칙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단과대학 학생회, 기구학생회에 적용한다.
- ③ 학과 및 전공별 학생회장 등의 선거는 해당 단과대학과 학과 학생회의 선거규칙을 준수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규칙이 없을 시에는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4조 【선거권】

- ① 선거권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정회원 모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때까지 확인된 재학생으로 한다.
- ② 재학생 확인은 재학생 명부로 확인하며 재학생 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군휴학 등 이후 휴학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 후 최종 확인하여 재학생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5조 【피선거권】**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에게 주어진다.

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 제1장 제2조 【선거규칙의 목적】에 위배하는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본 회의 정회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정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단, 편입생, 약학대학 학생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5.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6. 총학생회칙 제3장에 해당하는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가 아닌 자

7. 학생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8. 각과 예비역회장 및 여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 회장이 아닌 자
9.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가 아닌 자

## 제3장 후보자 등록

**제6조 【후보자 등록】**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시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2. 정회원 5% 이상의 추천서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단, 다른 후보자에게 추천은 복수추천이 가능하다)
3. 재학증명서 (정회원 등록절차를 마친 준회원의 경우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4. 출마소견문(200자 원고지 12매 이내)
5. 각 단위 선본명칭 및 위치, 핵심 선거 공약, 으뜸구호
6. 각 단위 선본사무장의 재학증명서

### 제7조 【입후보자 심사】

- ① 입후보자가 제3장 제6조 **【후보자등록】** 구비서류를 등록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2시간 전부터 제3장 제8조 **【입후보자 최종등록】**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제3장 제8조 **【입후보자 최종등록】**의 규정에 어긋남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한다. 등록 마감시간은 등록 최종일 20시로 한다.
- ③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는 각 선본 사무장이 참관할 수 있다.

**제8조 【입후보자 최종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심사가 끝난 후 2시간 이내에 입후보자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입후보자의 선본 사무장 전원으로 하며, 불참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구비서류 확인 및 최종등록 결정
2.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에서 로고상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선거 규칙 검토 : 규칙 검토와 함께 모든 입후보자의 선본사무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에 나오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4. 경선일 경우 투표용지상의 순서는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에서 각 단위 선본사무장들의 추천에 의해 결정한다.
5. 그 밖의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 모임에서 합의한다.

## 제4장 선거

### 제1절 통칙

#### 제9조 【선거 기획】

- ①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궐선거는 매년 3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선거일과 오프라인, 온라인 선거에 관한 부분은 인준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지정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단, 결정이 불가능할 시 중앙운영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 ④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⑤ 제3항의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절 선거운동

#### 제10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② 후보자 추천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후보자 추천기간에는 각 단위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모임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2. 후보자 추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기간 하루 전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3. 이름 또는 선거 본부 명칭을 거명한 후보자 추대모임은 1회에 한해 실내에서 실시하며, 그리고 이를 알리는 선전물은 대자보로 한다.
  4. 강의실에서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규제한다.
  5. 금품 및 기념품 배부 행위를 금지한다.

제11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운영위원회
  3. 총학생회칙 제3장에 해당하는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4. 각 과 및 학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예비역회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5.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분과장 및 동아리 회장
  6.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7. 직속위원회 위원장

8. 본교의 재학생이 아닌 자

단, 2, 3, 4, 5, 6, 7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7일 전까지 사임한 경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선본에게 경고 1회를 준다.

### 제3절 선거유세

#### 제13조 【선거유세 총칙】

① 선거유세는 개인유세, 합동유세, 현장에서의 유세, 온라인에서의 유세로 나뉘며 그 시기는 선거운동기간에 준한다.

② 학내언론은 공영제로 한다.

③ 포스터는 공영제로 한다.

④ 선거유세는 각 호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1. 부착물과 현수막은 최종공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본 사무장이 돌아다니며 결정한다.

2. 선거운동기간에 배포되는 사제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거친 후 선본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3.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4. 허가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5. 각 선본은 모든 선전물을 투표일 하루 전 20시까지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이 시간 이후의 선전물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치 및 내용을 결정한다.

6. 4호를 제외한 1호에서 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선본에게 경고 1회를 준다.

7. 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선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다.

#### 제14조 【개인유세】

① 개인유세는 각 선본의 후보 또는 선본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칭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본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유세는 각 선본이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개인유세와 관련된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지키지 않은 선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이상의 징계를 준다.

#### 제15조 【합동유세】

① 합동유세의 순서는 합동유세 1시간 전에 추첨하여 정한다.

② 유세시작 1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시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한 후보당 유세시간은 공연, 지지유세, 본 유세를 합하여 45분으로 한다. 45분이 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 등 유세 시설을 철거한다. 단, 유세자를 교체하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합동유세 시 현수막의 사용은 1개로 제한한다.
- ⑤ 합동유세 시 만장, 걸개그림은 사용할 수 없다. 단, 피켓 사용은 허용한다.
- ⑥ 후보자는 유세가 끝날 때까지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하에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 ⑦ 타 후보자가 유세 시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선본의 유인물, 선전물을 배포할 수 없다.
- ⑧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1회 이상의 징계를 한다.
- ⑨ 이 외의 합동유세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진다.

### 제16조 【현장에서의 유세】

- ① 모든 사제 유인물은 정책자료집 최대 두 종류, 후보자 포스터, 후보자 현수막으로 제한한다.
- ② 정책자료집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B5 크기로 제작하며, 부수는 7,000부 이내로 한다.
- ③ 후보자 포스터는 A2 크기로 제작하며, 총학생회 선본은 10개, 단과대학 및 총예비역회 선본은 8개까지 가능하다.
- ④ 후보자 현수막은 가로 10m, 세로 1.5m 까지 가능하며, 총학생회 선본은 4개, 단과대학 및 총예비역회 선본은 3개까지 가능하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제 유인물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이 시각까지 파일 및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사제 유인물 마감 시각을 6시간 이상 초과하여 제출된 유인물은 이용할 수 없다.
-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에 각 경고 1회를 주며, 유인물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 제17조 【온라인에서의 유세】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에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을 구성할 수 있으며, SNS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 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 및 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며 온라인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의 수를 제한하고, 각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아이디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④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⑤ 그 밖에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8조 【후보자 정책토론회】

- ① 정책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 ② 후보자는 정책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10분 전 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단, 이를 어길 시 징계가 주어진다.)
- ③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 및 정책발표, 학내언론사의 질의와 응답, 참석자의 서면질의 및 대면질의로 구성된다.
- ④ 후보자 정책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를 통제할 수 있다.
- ⑤ 이외의 후보자 정책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진다.

## 제4절 선거본부의 이의제기

### 제19조 【이의제기권자】

-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선본의 사무장만이 할 수 있으며 제출은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 ② 선거운동원은 사무장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이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해당 선본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20조 【이의제기의 처리】

- 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는 각 사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의결, 통보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의 위임이 있거나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처리 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요구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③ 사무장은 전체회의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를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④ 이의제기의 의결은 선거시행세칙 제5장 제25조 【소집 개회 및 의결】에 따른다.

## 제5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조 【위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를 비롯하여 각 단과대학 학생회, 기구학생회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선거규칙에 의하여 진행, 조절, 통제할 권한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22조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내는 데 있다.

### 제23조 【의무 및 권한】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호의 사무를 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모든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2. 학생회 선거를 올바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3. 선거규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본이 합의한 선거방식에 대한 집행을 감시한다.

4.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주의, 경고 등 각 선본에 대한 제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에 선거운동 자금 결산 내역을 마지막 유인물 또는 신문에 공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후보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6. 이 밖에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관하여 토론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칙 및 세칙·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한다.

#### 제24조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추천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임명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각 호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총학생회 추천 3인

2. 각 단과대학 추천인 【각 단과대학 학생 수 100인 당 1인, 최대 4인】

3. 동아리연합회, 총예비역회 추천 1인

③ 그 운영은 후보자 등록기간 10일 전부터 구성되어 시작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 및 추가 임명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와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 제25조 【소집, 개회 및 의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일상 업무 처리

3. 선본의 이의제기

4. 중앙선거관리위원 1/3 이상의 요구

5. 선거권자의 이의제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④ 당선공고에 관한 이의 의결은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다.

## 제6장 참관인

### 제1절 투표참관인

#### 제26조 【투표참관인 통칙】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본을 대신하여 해당 단위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각 선본은 각 단과대학 투표소 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 제27조 【자격】

- ① 투표참관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과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 선본의 동의를 얻어 타 단과대학 재학생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각 선본의 사무장은 투표참관인의 명단과 재학증명서를 투표 2일 전 17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선본에 경고 1회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③ 투표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전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재학증명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투표참관인 지정은 각 선본에서 투표구당 6명까지 할 수 있다.

### 제28조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본을 대신하여 투표 상황을 참관, 감독하며 결정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투표소에서의 이의제기는 투표참관인만이 할 수 있으며, 투표참관인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선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③ 해당 대학 투표소에 투표참관인이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타 선본 투표참관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④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구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의 입회 아래 각 선본 투표참관인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중단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제29조 【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 ① 참관인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선본을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할 경우
  3. 기타 투표구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부정행위로 결정한 행위
- 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타 선본 투표참관인의 동의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선본에게 경고 1회를 주고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까지 해당 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참관인 자격을 지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 제30조 【투표참관인의 의무】

-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시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자신의 도장을 항상 지참하여야 한다.
- ② 투표참관인은 투표시간 중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단, 해당 투표구의 중앙선거관리위원 동의 하에 자리를 비울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 당일 08시 30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에 도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함께 투표함을 운반한다.
- ④ 규정을 위반한 투표참관인에 대해서는 해당 선본에 시정명령을 주고 이를 다시 위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본에 주의 혹은 경고를 주며 투표참관인의 교체를 명한다.

## 제2절 개표참관인

### 제31조 【역할】

- ① 각 선본의 사무장은 투표 마지막 날 정오까지 개표참관인 5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시작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③ 개표참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당 각 선본 개표참관인 1명이 한 조로 하여 개표상황을 참관, 득표의 검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락 하에 시행한다.

**제32조 【개표참관인의 이의제기】** 개표참관인은 개표과정에서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투표용지 은닉
2. 전자기기 소지 여부
3. 투표용지 불량 및 훼손
4. 개표과정

## 제7장 징계

**제33조 【정의】** 징계라 함은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선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뉘며 시정명령 2회는 주의 1회,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단, 일정 사안에 대하여 중복 징계를 부여하거나 상위 차원의 징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논의를 통해 줄 수 있다.

### 제35조 【징계의 통보】

- ① 시정명령과 주의를 해당 선본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 ②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본이 이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선본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 ③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12시간 내에 공개 사과문을 경고공고문 옆에 게시해야 한다. 단, 투표 당일에 경고를 받을 경우, 경고 공고 2시간 내에 위와 같이 게시한다.

**제36조 【징계의 의결】** 징계의 의결은 선거시행세칙 제5장 제25조 【소집 개최 및 의결】에 따른다.

### 제37조 【재심의】

- ① 사무장은 경고나 주의 2회로 인해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 ② 선본이 경고 3회로 인하여 후보자격이 박탈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단, 이는 공고한다.

## 제8장 투표

### 제1절 통칙

#### 제38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 ① 투표는 3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투표시간은 오프라인의 경우 09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진행하며, 온라인의 경우 첫째 날 09시 30분부터 투표 종료일까지 24시간으로 진행한다.
- ③ 투표율이 35% 이상일 때는 연장 투표를 실시한다. 연장 투표시간은 제1항을 위배하지 않는 선으로 한다. 단, 온라인 선거의 경우 별도의 연장 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 ④ 긴급한 회의 혹은 선거규칙 제6장 제28조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제4항에 대한 시간은 해당 투표구만 그 시간만큼 연장한다.

#### 제39조 【투표구 및 투표소】

- ① 투표구는 각 단과대학별 1구로 한다. 단, 제1과학기술대학의 경우 공학과 이학 2개 투표구로 구분한다.
- ② 투표구는 그동안의 관례와 각 단과대학의 사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증가 및 감소할 수 있으며, 투표구 간에 선거권자 명단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③ 1개 투표구당 1개 투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유인물은 부착할 수 없다.

#### 제40조 【유효 투표율】

- ①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학 학생회 투표율이 37% 이상이 되면 개표를 할 수 있다.
- ② 기구학생회는 투표율이 29% 이상이 되면 개표를 할 수 있다.
- ③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학 학생회 투표율이 35% 이상의 경우, 기구학생회 투표율이 27%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제38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제1항을 위배하지 않는 선으로 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 기구학생회 중 일부 단위만 투표율을 넘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장투표를 실시하되 해당 단위만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표는 연장투표가 종료된 후 함께 시행한다.

#### 제41조 【신분확인】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1.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2. 신분확인용 사진이 부착된 모든 증명서가 가능하며, 이를 갖고 있지 않은 회원은 학교 포

털을 통해 학적사항이 조회된 정회원인 자로 한정한다.

#### 제42조 【투표절차】

- ① 선거권자는 자신이 속한 투표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 ②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분확인
  2.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3. 투표용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날인
  4. 유·무효표에 대한 고지(각 선분 투표참관인에게 의무가 있음)
  5. 투표용지 배부
  6. 투표

#### 제43조 【투표소에서의 질서】

- ① 투표소에서는 투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 투표참관인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 ②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투표 독려는 가능하다.

#### 제44조 【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 ① 투표함은 투표당일 08시 3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분 사무장의 참관 아래 각 호의 순서대로 봉한다.
  1. 투표함 확인
  2. 투표함 각 모서리에 봉인지 부착
  3. 봉인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해당 투표구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선분 투표참관인 날인
  4. 투표함 자물쇠 부분 봉인지 부착
  5. 봉인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해당 투표구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선분 투표참관인 날인
  6. 투표함 봉인
- ② 자물쇠를 채운 상태에서 각 호의 물품과 함께 각 투표구로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함께 이송한 후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한다.
  1. 선거인 명부
  2. 투표참관인 징계 서류
  3. 투표참관인 합의 서류
  4. 투표용지
  5. 투표에 필요한 모든 물품
  6. 투표율을 확인할 서류

#### 제45조 【투표 종료 후 투표함 봉인 및 이송】

- ① 투표함 봉인은 제7조 【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제1항 봉인 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 ② 투표함 이송 시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 물품은 각 호와 같다.
  1. 기재한 선거인 명부
  2. 투표참관인 징계 서류
  3. 투표참관인 합의 서류
  4. 남은 투표용지

5. 투표에 필요한 모든물품
6. 투표 후 최종 투표율을 확인할 서류

#### 제46조 【투표함의 확인 및 보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 제45조 【투표 종료 후 투표함 봉인 및 이송】의 서류, 물품 등을 인수한 후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이송 전후의 이상 유무에 관한 투표참관인의 각서 또는 서명을 받는다.
- ③ 각 투표구의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가 투표함 보관에 부적당할 시 각 선본 사무장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제9장 개표

**제47조 【개표 시간】** 개표 시간은 투표 마감 2시간 이후부터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 제48조 【개표 통칙】

- ①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 ② 표의 유·무효 및 특정후보의 득표의 기준은 제9장 제49조 【유·무효표 기준】에서 정한다.

#### 제49조 【유·무효표 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8. 투표용지에 참관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아니한 것
  9.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 운동 본부(→선본)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10. 투표용지가 훼손되어서 4와 8의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모든 선본은 제1항과 제2항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규칙에 대한 고지를 하는 첫 회의에서 과반 수 이상의 출석, 출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학년도 선거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유, 무효표에 대한 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당일, 기표소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 제50조 【개표장】

- ①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② 개표장에서의 질서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 ③ 후보자는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 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 ④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락 하에 부재를 허락하며, 대신 선본 사무장은 개표소에 있어야 한다.

#### 제51조 【개표소】

- ①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 ③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 제52조 【개표 절차】 개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투표인 수의 공고
2. 투표함 개봉
3. 개표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5.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6. 현황판에 기재

#### 제53조 【효력】

- ①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처리 한다.
- ② 전체적으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
- ③ 투표율 오차의 계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기재한 투표인 수와 단과대학 별 투표함 속의 투표 용지수의 오차 절대 값으로 한다. 단, 학과 및 전공별 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는 오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④ 오차율의 경우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인정하고 뒷자리는 내림으로 버린다.

## 제10장 당 선

#### 제54조 【당선의 기준】

- ①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선거의 기준은 각 호의 경우에 따른다.

1. 단선일 경우 70% 이상의 찬성일 때 당선
2. 경선일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 단,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 차이는 전체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여야 한다.

#### 제55조 【당선 공고】

①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를 받는다. 단, 이의 제기가 있는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소집하여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재적 대표자 2/3 이상으로 개의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2항에 따라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을 긴급한 경우로 간주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즉시 소집하고 의결한다.

④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⑤ 선거권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처리는 2항과 같게 한다. 이의 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면의 양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의제기자의 성명 및 소속 단위
2.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내용
3. 이의제기의 취지 및 이유

## 제11장 재선거 및 재투표

#### 제56조 【재선거】

① 제9장 제5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0장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

② 재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기를 결정한다.

#### 제57조 【재투표】

① 전체투표율이 개표 성사율 이상이 안 될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

② 재투표는 일주일 안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③ 재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확정을 못할 시에는 보궐선거로 넘긴다.

## 제12장 부칙

제58조 【시행세칙의 재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본 규칙의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제59조 【규칙의 효력 발생】** 본 규칙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9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제60조 【시행세칙의 보관】** 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을 제정 및 선포하고, 이를 보관하여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 사무처리세칙

[고려대학교 세종총학생회 세칙 제2호]

2020.10.15 제 정    2021.04.08 개 정

제1장 총칙 .....	
제2장 사무 처리 .....	
제3장 문서의 작성 .....	
제4장 문서의 서식 .....	
제5장 문서·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	
제6장 사무처리규칙 .....	
부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이 회의 각 기구의 사무 처리의 원칙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이념】

- ① 이 회의 사무 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이 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 제3조 【정의】

- ① 이 세칙에서 “작성자”라 함은 문서를 생산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이 세칙에서 “책임자”라 함은 사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이 세칙에서 “수신자”라 함은 사무 처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④ 이 세칙에서 “기록물”이라 함은 이 회의 업무에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 ⑤ 이 세칙에서 “기록물 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⑥ 이 세칙에서 “기록물 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⑦ 이 세칙에서 “기록물 관리자”라 함은 이 회의 기록물 관리 과정에서 기록물을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이 회의 사무 처리 및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이 회의 각 기구에 적용한다.

## 제2장 사무 처리

### 제6조 【사무 처리의 원칙】

- ①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이 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전문화되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무의 분장】** 사무 처리의 책임자는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국서별 사무를 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위원간의 업무량이 균형 있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로 한다.

### 제8조 【사무의 인계·인수】

- ① 선거, 조직 개편 또는 업무 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②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관계문서·자료·그 외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업무 일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그 외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되었을 때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중앙집행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집행위원 명단을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장 문서의 작성

제9조 【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총학생회칙」·세칙·규칙 등에 관한 문서
2. 공고문서: 공고 또는 일정한 안내사항을 산하기구 혹은 회원 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문서
3. 지시문서: 이 회의 각 기구가 그 산하기구나 소속 위원 등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문서
4. 비치문서: 이 회의 각 기구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기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명단 등의 문서
5. 처리문서: 회원이 이 회의 각 기구에 허가, 신청,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부문서, 내부문서, 안건지 등의 문서

### 제10조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 ① 문서는 책임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을 때 성립한다. 단, 서명은 자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 전자문서의 도달은 수신자의 컴퓨터에 도달할 수 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조 【문서의 생산 의무】

- ① 이 회의 각 기구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할 때 미리 그 조사·기획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 ② 각 기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의 표준화 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 제12조 【문서의 생산】

- ① 이 회의 각 기구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인쇄물 두 가지 형태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모든 문서에는 기록물 책임자와 작성자의 소속, 지위,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④ 이 회의 각 기구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책임자는 각 기구의 장이며, 해당 문서의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책임자에게 있다.
- ⑤ 작성자가 여럿일 때는 각 작성자가 기록한 영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자를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문서의 전자적 생산·관리】** 이 회의 각 기구는 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 ① 문서는 대한민국 법률 「국어기본법」에서 정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④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A4)로 한다.

## 제4장 문서의 서식

### 제15조 【의결기구 문서의 서식】

- ① 의결기구는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록물을 생산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결석계
  2. 회의 소집요구서
  3. 회의 실시·결과 공고문
  4. 회의록
  5. 회의 자료집
  6. 회의 안건지
-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제1항의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해당 회의체의 의장이 접수한다. 관련 서식은 제1항의 규칙에 따른다.

**제16조 【집행기구 문서의 서식】**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1. 각종 공문
2. 중앙집행위원 명단
3. 직속위원회 명단

**제17조 【자치산하기구·독립기구 문서의 서식】**

① 자치산하기구·독립기구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1. 자치규칙
2. 자치규칙 개정 작업과 관련된 기록물

② 자치산하기구는 필요할 때 산하기구의 의결기관·집행기관·산하기관에서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를 준용하여 문서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선거 문서의 서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중앙선거관리위원 해임 요구서, 사직 요청서, 추가임명 동의안이 첨부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요구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4. 각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공고문
5. 각 선거운동본부원 명부
6. 선거 공고문
7.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자 공고문
8. 사과문
9. 이의제기 안건지
10. 각 투표소의 참관시간표
11. 개표 결과
12. 당선 공고문

**제19조 【재정 문서의 서식】** 이 회의 각 기구는 이 세칙에 부수된 규칙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문서를 생산한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각 집행기구, 자치산하기구, 독립기구의 예산안·결산
2. 교지대의 결산

## 제5장 문서·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 제20조 【기록물에 대한 의무】

- ① 이 회의 모든 회원은 「총학생회칙」과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는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집행기구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이관할 의무를 지닌다.
- ③ 기록물 관리기관과 협의한 산하기구·특별기구는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산하기구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이관할 의무를 지닌다.
- ④ 기록물 관리기관은 이 회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를 지닌다.

### 제21조 【기록물 관리의 원칙】

- ① 이 회의 각 기구와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록물의 책임자는 상호 관련 있는 기록물들을 기록물철로 묶어서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와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 ③ 이 회의 각 기구와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이 회의 각 기구와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22조 【기록물의 보존】

- ① 기록물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보관한다.
  1. 집행기구의 의결기관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
  2. 집행기구의 선거에서 생산된 정책자료집, 유인물 등의 각종 선거 관련 자료
  3. 그 밖에 기록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기록물
- ② 모든 기록물은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크기로 인해 효율적인 보관이 어려울 경우 축소 복사할 수 있다.

### 제23조 【기록물 관리기관】

- ① 이 회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② 기록물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의 총괄·조정과 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
  2. 기록물 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과 기록물 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체계 구축과 표준화
  4. 기록물 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6.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이 회의 집행기구는 기록물 관리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 【정보공개청구】**

- ①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보관 중이나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②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보관 중인 인쇄 기록물의 원본은 대여할 수 없으며, 독립기구 내에서 열람하거나 복사를 통해서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 ③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은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제6장 사무처리규칙**

**제25조 【사무처리규칙】** 사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사무처리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 2. 중앙집행위원장의 발의
- 3. 기록물 관리기관의 발의

② 각 사무처리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정운용세칙

[고려대학교 세종총학생회 세칙 제3호]

2020.10.15 제 정      2021.04.08 개 정  
2023.11.01 개 정

제1장 총칙 .....	
제2장 재정운용의 원칙 .....	
제3장 회계	
제1절 총수입·총지출 .....	
제2절 예산 결산 .....	
제4장 기구별 재정	
제1절 통칙 .....	
제2절 의결기구 재정 .....	
제3절 집행기구 재정 .....	
제4절 자치산하기구 재정 .....	
제5절 특별위원회 재정 .....	
제5장 기타 재정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 .....	
제6장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 .....	
제7장 재정운용규칙 .....	
부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이 회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산하기구, 전문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원칙】

이 회의 재정은 총학생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제3조 【대표자의 책임】

-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자치산하기구·전문기구는 재정 운용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 협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회 재정 운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 제4조 【적용 범위】

이 세칙은 총학생회의 집행기구, 자치산하기구, 전문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적용한다.

## 제2장 재정 운용의 원칙

### 제5조 【예산안·결산 심의의 원칙】

-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예산안·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총학생회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회의 자치산하기구·전문기구와 학생사회에서 특정한 위상을 가진 단체의 예산안·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 ③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총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④ 예산안·결산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 ⑤ 예산안·결산의 작성은 재정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할 때 「사무처리세칙」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 【예산안·결산 삭감의 원칙】

- ① 예산안·결산을 「총학생회칙」과 이 세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예산안·결산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해당 학기의 총학생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10%, 30%, 50%의 비율 중에서 지급액을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② 예산안·결산이 통과되지 않아 총학생회비 지급을 삭감할 때, 삭감된 금액은 삭감이 된 기구가 속한 기구의 나머지 지급 대상 단체에 책정된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타 영역에 속한 단체의 수입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단, 집행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배분

의 방식은 아래 각호를 따른다.

1. 삭감된 기구가 집행기구일 때 : 자치산하기구에 삭감액의 80%, 직속위원회에 삭감액의 20%를 배분하고 각 기구별로 책정된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2. 삭감된 기구가 자치산하기구일 때 : 자치산하기구에 제28조와 제29조, 제30조의 책정된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3. 삭감된 기구가 직속위원회일 때 : 직속위원회에 제 조의 책정된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 **제7조 【총학생회비 집행의 원칙】**

- ① 총학생회비는 이 회 각 기구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 ② 총학생회비는 각 기구에 소속된 위원의 편익을 위해서는 운용될 수 없다. 단,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할 수 있다.
- ③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④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 ⑤ 제5조 2항의 예산안·결산을 공개하는 단체의 재정 집행 또한 제1조에서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 【총학생회비 배분의 원칙】**

총학생회비 배분은 재정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구, 재정 운용을 총학생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구를 고려하여 각 기구에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총학생회비가 배분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회계연도】**

-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 또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에 맞춘다.
- ② 이 회의 집행기구·자치산하기구·특별위원회는 각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예산·집행·결산한다.
  1. 1분기: 총학생회 또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기일부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2분기: 1학기 개강일부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4분기: 2학기 개강일부부터 총학생회 또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임기일까지

#### **제10조 【재정운용회의】**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집행기구와 각 자치산하기구·전문기구의 재정 담당자가 필두로 하는 재정운용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재정운용회의의 구성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집행기구의 재정 담당자, 집행기구의 재정 담당자는 재정운용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자치산하기구의 재정 담당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전문기구의 재정 담당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③ 재정운용회의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집행기구·자치산하기구·전문기구의 예산안·결산 작성

2. 집행기구·자치산하기구·전문기구의 배정 예산 조정
3. 사업별 배정 예산 조정
- ④ 집행기구의 재정 담당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제출할 예산안·결산을 작성하기 전에 재정운영회의를 최소 2회 이상 개최하여서 논의하고, 해당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과 각 단과대학의 등록자 수를 공지하여야 한다.
- ⑤ 각 자치산하기구·전문기구 재정 담당자는 재정운영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재정운영회의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3장 회계

### 제1절 총수입·총지출

#### 제11조 【총수입】

- ① 총수입은 총학생회비 수입, 교비지원금, 발전기금, 그 밖에 수익금의 총합을 말한다.
- ② 총학생회비 수입은 전년도 같은 학기의 등록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교비지원금은 전년도 같은 학기의 교비지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결산에 반영한다.
- ③ 발전기금은 사업별 광고수익, 기부금 등을 말한다.

#### 제12조 【총지출】

- ① 총지출은 지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한다.

### 제2절 예산·결산

#### 제13조 【예산안의 편성】

- ① 예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관·항·목 또는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사업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세한 과목 구분에 관하여서는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 ② 같은 분기 예산상 동일한 항목이 있으면 각 항목별로 전년도 결산과 비교하여 전년도 대비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각 기구의 예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결산의 작성】

- ① 결산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장·관·항·목 또는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사업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세한 과목 구분에 관하여서는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 ② 같은 항목 예산이 있으면 각 항목별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비교하여 예산대비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각 기구의 결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에 관하여서는 입금된 통장 사본,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각 기구의 결산서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양식에 관하여서는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 기구별 재정

### 제1절 통칙

제15조 【총학생회비 책정】 총학생회비는 「총학생회칙」 제104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고지한다.

제16조 【분배율】 총학생회비는 다음 각호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집행기구: 60%

자치산하기구: 33.4%

직속위원회: 6.6%

### 제2절 의결기구 재정

제17조 【의결기구 재정】

- ① 의결기구 재정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의 운영에 사용된다.
- ② 의결기구 재정은 배정 없이 집행기구 재정에서 사용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 ③ 의결기구 재정은 의결기구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행기구 재정의 예산안·결산 작성시 작성하며, 중앙집행위원장이 집행기구 예산안·결산에 포함하여 함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

### 제3절 집행기구 재정

제18조 【집행기구 재정】

- ① 집행기구의 재정은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 ② 총학생회 재정 운용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 **제19조 【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 ①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60%를 집행기구에 배정한다.
- ② 집행기구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1. 운영비
  2. 정기사업비
  3. 비정기사업비
  4. 국서·위원회별 재정
  5. 그 밖에 재정

#### **제20조 【운영비】**

- ① 운영비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업무의 추진,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 ② 운영비는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21조 【정기사업비】**

정기사업비는 매해 반복되어 진행되는 새내기 새로배움터, 4·18대장정, 대동제, 고연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22조 【비정기사업비】**

비정기사업비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가 특정한 시기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23조 【국서·위원회별 업무추진비용】**

국서·위원회별 업무추진비용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서별 활동과 총학생회장단·전체학생대표회의·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활동을 위해 배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24조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재산조정비, 지원금, 과년도지출, 예비비 등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비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 **제2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2학기 총학생회비 수입 중 집행기구 배분분의 10% 이상을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로 배정한다.

### **제4절 자치산하기구 재정**

#### **제26조 【자치산하기구 재정】**

- ① 자치산하기구 재정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예비역회, 동아리연합회의 운영과 사업 집행

에 사용된다.

② 자치산하기구 재정 운용의 책임은 각 산하기구의 집행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에 있다.

#### **제27조 【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33.4%를 자치산하기구에 배정한다.

#### **제28조 【단과대학·독립학부 재정】**

① 자치산하기구에 배정된 금액의 60%를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에 배정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인원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이때 인원 비율의 계산은 해당 학기 등록자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재정운영회의를 통해 제2항의 인원 비율에 따른 배분 이외의 계산식을 사용하여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에 대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신생 단과대학·독립학부는 재정운영회의를 통해 지급액을 논의한다.

#### **제29조 【총예비역회 재정】**

자치산하기구 재정의 19%를 총예비역회에 배정한다.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제30조 【동아리연합회 재정】**

자치산하기구 재정의 21%를 동아리연합회에 배정한다. 천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제5절 직속위원회 재정**

#### **제31조 【직속위원회 재정】**

① 직속위원회의 재정은 각 직속위원회의의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직속위원회 재정 운용의 책임은 재정 담당자가 있는 기구는 재정 담당자에게, 없으면 해당 직속기구의 기구장에게 있다.

#### **제32조 【총학생회비 수입의 배정】**

① 각 학기 총학생회비 수입의 6.6%를 직속위원회에 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속위원회에 배정된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직속위원회에 배분한다.

1. 교육복지위원회 45%
2. 인권복지위원회 55%

## 제5장 기타 재정

###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

#### 제3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예비역회장 선거의 시행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사용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운용의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있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결산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작성하여 선거 이후 최초의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단, 최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이전에 임시회의가 개회되면 결산을 그 임시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다.

### 제6장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

제34조 【인상률】 총학생회비·교지대는 3년마다 5%씩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3년간의 물가인상률과 등록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5조 【조정 절차】

- ①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안은 「총학생회칙」 제53조 7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가 작성하여 매 2학기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총학생회비·교지대를 배분받는 각 기구와 자치언론에 총학생회비·교지대의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은 「총학생회칙」 제29조 【소집】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6조 【재심의】

정회원 5% 이상의 연서로 총학생회비·교지대 조정의 재심을 요구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비 인상안을 재심의한다.

제37조 【금액 조정의 발효】 총학생회비·교지대가 조정되면 조정된 금액은 다음연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제7장 재정운용규칙

제38조 【재정운용규칙】 재정 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 제39조 【제정·개정·폐지】

- ①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중앙집행위원장의 발의
- ② 각 재정운용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회의진행세칙

[고려대학교 세종총학생회 세칙 제4호]

2020.10.15 제 정

2024.03.09 개 정

제1장 총칙 .....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	
제3장 회의의 구성 .....	
제4장 안건 .....	
제5장 발언 .....	
제6장 동의 .....	
제7장 표결 .....	
제8장 회의록 .....	
제9장 소규모회의 .....	
제10장 회의진행규칙 .....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의 각종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회의결기구의 회의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제3조 【정의】

- ① 이 세칙에서 '회의체'라 함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단체의 최고 의사를 포함한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이 세칙에서 '회의'라 함은 회의체의 의사활동을 말한다.
- ③ 이 세칙에서 '구성원'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을 말한다.
- ④ 이 세칙에서 '의결'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회의진행세칙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된 단체의사를 말한다.

**제4조 【대표자의 책임】**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이 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 【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이 회의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 회의에 적용한다.
-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진행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

**제6조 【세칙의 해석】** 이 세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이 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 제7조 【공개 원칙】

- ① 이 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회의의 방청권을 가진다. 단,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③ 이 회의 회의의 의결사항과 회의록은 공개한다.

**제8조 【정족수의 원칙】** 이 회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총학생회칙」· 세칙 · 규칙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제9조 【일의제의 원칙】** 이 회 회의에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토론자유 원칙】**

① 이 회 회원은 누구나 회의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의장은 필요할 때 토론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② 발언 횟수와 시간은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

③ 발언권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교대로 발표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평등의 원칙】** 이 회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다수결의 원칙】** 이 회 회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이 회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4조 【일사부재의 원칙】**

① 한 번 처리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같은 회의체 또는 하위 회의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하면 한 번만 같은 회의체 또는 상위 회의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회의체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2항, 상위 회의체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4항에 따른다.

② 한 번 처리된 안건을 같은 회의체에 다시 상정하기 위해서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 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때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가진 안건은 한 번 처리되면 같은 회기 중에 같은 회의체 또는 하위 회의체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한 번 처리된 안건을 상위 회의체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의 요구의 대상이 되는 회의체의 안건 발의 요건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회의체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 여부를 의결하고, 재의가 의결되었을 때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⑤ 이 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1회기 :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회기 :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회기 :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회기 :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 제15조 【회기 불계속의 원칙】

- ① 이 회 회의체에서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된다. 단, 계속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하위 회의체로 안건 위임되거나, 기한부 연기 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될 수 있다.
- ② 안건 위임은 해당 회의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주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면 이에 따른다.
- ③ 기한부 연기 동의는 제47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다.
- ④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회의체는 한 회기의 마지막 회의에서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의 안건 위임 또는 기한부 연기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 제3장 회의의 구성

제16조 【구성】 이 회 각 회의체는 「총학생회칙」· 세칙· 규칙에 따라 구성한다.

### 제17조 【의결권】

- ①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② 이 회와 특정 구성원과의 사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의결할 때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이 회 각 회의체에서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학생회장 결위 시, 약학대학의 경우 2학기부터 부학생회장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 제18조 【의장】

- ① 이 회 각 회의체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의장은 이 회 회의체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③ 의장은 이 회 회의체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소규모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 【서기장과 서기】

- ① 이 회 각 회의체는 개회 직후 구성원 중 한 명을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서기장으로 임명한다. 서기장은 필요에 따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다.
- ② 서기장은 서기를 관리감독한다.
- ③ 서기는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 한다.

제20조 【소집】 의장은 회의 일주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각 구성원에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규모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의사정족수】** 이 회 각 회의체는 회의장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적하고 있어야 의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22조 【회순】**

① 개의로부터 산회에 이르는 회순은 각 호에 의한다.

1. 성원보고
2. 개의선언
3. 의례
4. 의장인사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순서 확정
7. 안건심의
8. 산회선언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 제3호와 제1항 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 용어의 정의】**

- ① 이 세칙에서 '개회'라 함은 한 회기 동안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세칙에서 '개의'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날 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이 세칙에서 '유회'라 함은 개의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의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 ④ 이 세칙에서 '정회'라 함은 회의 도중 사정에 의하여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 ⑤ 이 세칙에서 '산회'라 함은 당일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 ⑥ 이 세칙에서 '폐회'라 함은 한 회기 동안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제24조 【회의의 산회·유회·정회】**

- ① 모든 안건의 심의가 끝났을 때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 ② 의장은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의사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속회할 방안을 논의하거나, 회의의 정회 또는 산회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유회되면 의장은 같은 회기 중에 회의를 재소집한다. 같은 회기 중에 회의를 재소집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회의체에 제출된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 ⑤ 제3항에 따라 회의가 산회되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의사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하위 회의체에 위임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단, 하위 회의체로 위임할 수 없는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제25조 【의사조정위원회】**

- ① 회의 개의 전 또는 회의 중에 회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사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의사조정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사조정위원회는 회의체 구성원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 제4장 안건

### 제26조 【안건】

- ① 안건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 ②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 제27조 【안건의 제출】

-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 1.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
  - 2. 총학생회장단 발의 안건
  - 3. 정회원 5% 이상의 연서 발의
  - 4.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 ② 안건의 제출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철회】 안건의 제출자는 회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29조 【안건심의】

- ① 당일 심의할 안건이 2개 이상이면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안건 또는 동의를 병합하여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 또는 동의를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단, 의결요건이 다른 안건 또는 동의를 병합하여 표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중된 의결요건을 따라야 한다.

제30조 【토론동의】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수정을 비롯한 동의들의 적용대상이 된다.

### 제31조 【안건의 처리과정】

- ① 안건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안건 상정
  - 2.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 3.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4.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 5. 안건에 대한 논의 종결
  - 6. 안건에 대한 표결
- ② 안건 심의 중 동의를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를 상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동의를 처리 결과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32조 【의결정족수】** 「총학생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발언

### 제33조 【발언권】

- ①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 ② 발언권을 얻은 자는 성명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 ③ 구성원은 이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구성원이 아닌 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34조 【발언 횟수와 시간】

- ① 회원은 하나의 안건 또는 동의에 대하여 3회까지 발언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회원의 1회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 【신상발언】** 신상발언이라 함은 자신의 신상 문제가 구성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 제36조 【의사진행발언】

- ① 의사진행발언이라 함은 의장이 회의 진행을 적절하게 주재하지 못할 때 회원이 의장에게 적절하게 주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 ② 의사진행발언은 규칙 발언,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정회, 축조심의, 특청, 일정촉진,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의사조정위원회 소집요구 등으로 한다.

### 제37조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의 발언 허가】

- ① 회원이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의장은 동의보다 우선하여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② 신상발언, 규칙 발언, 특청, 일정촉진에 관하여는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도 회원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은 당시 발언 중인 사람의 발언을 잠시 중단시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회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 제38조 【의사진행발언의 처리】

- ①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의장은 그 발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제1항의 결정 중 규칙 발언 이외의 발언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 회원의 항의에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항의를 회의체에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의 결정은 반복된다.
- ③ 규칙 발언은 의장이 「총학생회칙」·세칙·규칙을 참고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회의체는 그 발언의 처리를 마쳐야 그 발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안건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39조 【의제 이외의 발언 등】** 회원은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6장 동의

**제40조 【동의】** 동의는 다른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에 대해 회의 중에 새롭게 토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 제41조 【동의의 성립·상정】

- ① 속회 동의를 제외한 모든 동의는 구성원 한 명의 제출과 다른 구성원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된다.
- ②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에 따른 의제 속에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제42조 【동의의 종류·서열】

- ① 동의에는 속회, 토론종결, 연기, 회부, 수정, 재심의동의 등이 있다.
- ② 동의들 사이의 서열은 제1항에 열거되어있는 순서와 같으며, 상위 동의가 계류 중인 때에 하위 동의는 제출될 수 없다.

**제43조 【준용】** 동의에는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를 준용한다.

### 제44조 【재심의동의】

- ① 재심의동의를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동의이다.
- ② 일단 회의가 산회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 ③ 재심의동의에 의해 제출된 재심의안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5조 【수정동의】

- ① 수정동의를 안건 또는 동의를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경쟁적, 적대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자는 동의이다.
- ② 수정의 방식으로는 개별방식과 포괄방식이 있으며, 개별방식에는 삽입, 삭제, 대체가 있고 포괄방식에는 대안이 있다.
- ③ 수정동의에 의해 수정안 또는 대안이 제출되면 제32조에 따라 의결한다. 복수의 수정동의에 의해 복수의 수정안 또는 대안이 제출되면 이를 일괄 제출받아 택일표결로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 ④ 수정안 또는 대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다.

#### 제46조 【회부동의】

- ① 회부동의를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자는 동의이다.
- ② 안건 일부의 처리를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자는 것도 이 동意的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회부 할 때는 그 명칭, 위원의 수와 그 선출방법,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회의체가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면 위원 중 한 명이 임시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 ④ 이 회의는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기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회부취소의 결의로 그 안건을 돌려받아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하거나 이 회의가 직접 심의할 수 있다.
- ⑤ 이 회의는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로부터 최종보고를 받은 이후에 그 안건을 다른 하급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 ⑥ 회부동이가 성립되면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부안을 의결한다. 회부안이 의결되면 해당 안건은 최종보고를 마치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 제47조 【연기동의】

- ① 연기동이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 시점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 연기하자는 동의이다.
- ② 연기동이에 일정 시간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란 명시가 없으면 다음 안건의 심의종료 시까지 연기하자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연기동이에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은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 ④ 기한부 연기동이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다음 회기로 이월하자는 동의이다.
- ⑤ 기한부 연기동이에 의해 제출된 기한부 연기안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주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면 이에 따른다.

#### 제48조 【토론종결동의】

- ① 토론종결동이는 즉시 또는 어떤 조건의 성취 뒤에 현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이다.
- ②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두 명씩의 토론이 있기 이전에는 즉시 토론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동이에 이의가 없을 때 의장은 토론을 종결시킨 후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9조 【속회동의】

- ① 속회동이는 정회된 회의를 재개하자고 하거나 다음 일시를 정하여 회의를 속개 하자는 동의이다.
- ② 속회동이는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속회동이의 제출은 의장에게 한다.
- ③ 속회동이가 제출되면 의사조정위원회는 의사조정위원회의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회된 회의를 재개하거나 회의를 속개할 일시를 정한다.

## 제7장 표결

### 제50조 【표결】

- ① 안건과 동의를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 ②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과 동이가 그 대상인지를 밝혀야 한다. 단, 회원들이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일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1조 【표결방법】

-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구성원이 제의하여 해당 회의가 의결하거나 재적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 ④ 표결에는 회의장에 있는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참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 ⑤ 표결할 때는 반드시 찬성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권을 물어서 계산한다. 단,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한다. 단,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비표를 정하여 표결할 수 있다.

### 제52조 【택일표결방법】

- ① 택일표결에는 일괄표결과 순차표결이 있다.
- ② 일괄표결을 할 때는 복수의 안들을 일괄적으로 표결하여 과반수를 얻은 안을 다시금 찬반표결에 부친다.
- ③ 제2항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안이 나오지 아니하면 상위 2개 안을 결선투표에 부쳐 상대적으로 다수인 안을 찬반표결에 부친다. 이때 결선투표에서도 동수가 나오면 의장이 추첨으로 정한다.
- ④ 순차표결을 할 때는 복수의 안 중 회의체에 최후로 제출된 안부터 먼저 표결하며 의결정족수를 만족하는 안이 나오면 표결을 중단하고 해당 안이 가결된다.

**제53조 【감표위원】** 의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 구성원 중에서 1명 또는 수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54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 제8장 회의록

### 제55조 【회의록】

- ① 이 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의·정회·유회 또는 산회의 일시
  3. 개의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4. 구성원이 제4조에 해당할 때, 구성원의 지각·조퇴 사항
  5. 부의안건의 제목과 내용
  6. 의사
  7. 표결 결과(구성원이 제4조에 해당할 때, 기명투표는 각 구성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다.)
  8. 하위 회의체 또는 위원회로 안건 위임될 때 위임되는 안건의 제목
  9.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각 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회의록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 중 한 명을 서기로 하여 작성한다.
- ④ 회의록은 의장이 서명·날인 하여 공개한다.
- ⑤ 소규모회의는 제1항의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 공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제9장 소규모회의

### 제56조 【소규모회의】

- ① 소규모회의라 함은 재적 인원의 수가 20명 내외인 회의체를 말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재적 인원의 수가 20명이 넘더라도 소규모회의로 본다.
- ③ 소규모회의는 제18조 제4항의 의장의 토론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소규모회의는 제20조의 회의 일주일 전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소규모회의는 제34조 제1항의 발언 횟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소규모회의는 제41조 제1항의 모든 동의를 성립에 재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제10장 회의진행규칙

**제57조 【회의진행규칙】** 회의 진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의진행규칙이라 한다.

### 제58조 【제정개정폐지】

- ① 각 회의진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다.
- ② 각 회의진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예·결산특별위원회운영세칙

[고려대학교 세종총학생회 세칙 제5호]

2020.10.15 제 정      2023.01.11 개 정  
2023.11.01 개 정

제1장 총칙 .....	
제2장 구성 .....	
제3장 회의 진행 및 업무 .....	
제4장 안건의 처리 .....	
제5장 해산 .....	
제6장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 .....	
부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예·결산특별위원회와 그 회의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예·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세칙에서 ‘예·결산특별위원회’라 함은 「총학생회칙」 제26조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산하에 설치된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 【대표자와 각 기구의 책임】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예산안과 결산에 적용한다.

## 제2장 구성

**제5조 【구성】**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매 학기 종강일로부터 30일 전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 구성한다.

### 제6조 【위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에서 파견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최대 두 명
3. 각 동아리연합회에서 파견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최대 두 명

② 예·결산특별위원이 없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발언권을 가진 재정 담당자 한 명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을 대신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자는 예·결산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 【위원장】

①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결산특별위원이 되는 자 중 한 명으로 하여야 하며,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④ 위원장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각 기구들의 예산안·결산을 심사하여야 한다.

### **제9조 【인준】**

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업무를 개시하며, 구성 이후 최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사후 인준은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예산안·결산 보고 및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다룬다.

②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사후 인준이 부결된 경우 기존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무효가 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예산안·결산 처리를 위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의 소집을 결정하여 공고한다.

## **제3장 회의 진행 및 업무**

**제10조 【의장】**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의장은 예·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한다.

### **제11조 【소집】**

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예·결산특별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② 제1항 제2호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된다.

**제12조 【개회·의결요건】** 예·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 【업무】**

①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칙」 제106조에 따른 총학생회비 예산안·결산의 사전 심의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 사전 심의
2. 「총학생회칙」 제106조에 따른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특별기구의 예산안·결산의 심의 및 인준

②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심의한다.

**제14조 【자료의 사전제출】** 제13조제1항에 의해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받는 기구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예정일 2일 전까지 해당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석요구】 예·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할 시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 재정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진행세칙】 그 밖의 회의 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에 따르도록 한다.

## 제4장 안건의 처리

제17조 【사전 심의된 예산안·결산】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은 총학생회비와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결산은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18조 【가결된 예산안·결산】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하기구·특별기구의 예산안·결산이 가결된 경우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부결된 예산안·결산】

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하기구·특별기구의 예산안·결산이 부결된 경우 해당 산하기구·특별기구는 예·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일 당일까지 수정안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된 예산안·결산의 수정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재심의를 받는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하기구·특별기구에게는 「총학생회칙」 111조 1항에 따라 징계를 내린다.

1. 제1항에 해당함에도 수정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의 재심의를 부결될 경우

## 제5장 해산

제20조 【해산】 당해 학기의 예·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학기의 업무 및 보고가 종료되었을 경우 해산한다.

## 제6장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

제21조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 제22조 【제정·개정·폐지】

① 각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중앙운영위원의 발의
2. 예·결산특별위원의 발의

② 각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
2. 예·결산특별위원회 재적 예·결산특별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예·결산특별위원 과반수 찬성

## 부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